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는 전제임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인 ○○○ (대표사업자 : ○○○, 참여사업자 : ○○○)(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 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 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 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 조 (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5 조 (사업수행기간)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한날로 한다.

제 6 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투입인력 관리) ① "을"은 본 사업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완료시 까지 교체할 수 없다.

- ② "을"의 인력은 "갑"의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을"의 업무처리규정이나 복무규정이 다를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③ "갑"은 필요시 "을"의 인력에 대해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복무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다.
- ④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투입하기로 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투입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⑤ 사업수행 도중 "갑"으로부터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을"은 10일 이내에 그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을"이 참여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에 "갑"에게 신 참여자들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산출물의 제출) 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갑"이 일정진행에 따른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사업부문 단계별로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단계별로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임의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대금지급) ① 용역수행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와 월별 유지관리 내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제 12 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단계별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 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검수일이 끝난 월의 말일까지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② 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갑"의 요청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의 의무를 갖는다.

- ③ “을”은 대금지급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이행 보증) ①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③ 계약보증금은 사업완료일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16 조 (사업수행의 지연 및 지체상금) ① “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사업 부문별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예정 익일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각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단,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1,000분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면하게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2. “갑”의 귀책사유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제1항의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한 날로부터 “갑”이 검수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정당한 수정요청에 의하여 “을”이 산출물을 수정, 보완하는데 소요된 날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7 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증대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상호 합의하에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갑”이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

견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어떠한 계약대금이나 예치금에서 "갑"이 임의로 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의 환수요청이 있을 시 "을"은 이의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갑"은 제1항 3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해지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일까지의 본 용역 수행의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

제 19 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20 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대외공개 및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 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일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22 조 (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23 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적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